

투자권유준칙

소관부서 : 금융소비자보호팀

제정 2009.02.04

개정 2009.02.16

2009.02.19

2009.03.16

2009.09.25

2011.01.07

2011.09.23

2012.07.11

2013.08.29

2014.06.01

2014.10.01

2016.04.01

2016.06.30

2017.01.01

2019.06.26

2020.07.23

2021.06.23

2023.05.24

2024.01.01

2024.03.01

2026.02.06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 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

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

- 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④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인, 경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2.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장 투자자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및 (별지 제1-1호) "현재 투자자금성향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회사가 모바일 서비스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에 의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⑤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금융상품 이해도 등 필수 투자자정보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는 투자권유 전 매번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 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5호)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 2.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 ⑤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 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 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 2.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 ⑥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

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등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적합성 평가를 '혼합방식(Scoring+Factor-out)'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투자자의 '목표시장 설정기준' 관련 정보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사전에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⑧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필수 투자자정보(6개)가 평가 항목에서 누락되거나 평가에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목적

2. 재산상황

3. 투자경험

4. 투자자의 연령

5. 투자위험 감수능력

6.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⑨ 현재 투자자금성향 파악 결과 원금보존 추구로 확인된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가능한 상품 범위를 '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상품구조상 만기까지 환매가 제한되는 상품 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7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 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아래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3) 신탁계약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1)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2)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 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3. 금소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에 투자자가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4. 투자자와 대면하여 투자성 상품이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투자자로부터 요청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투자성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

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 권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등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제3항 제2호에 따른 목표시장의 설정기준에 부합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가 스스로 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를 징구하는 경우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거래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음)
-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설명의무

제14조(설명 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 (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임직원등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⑧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⑩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⑪ 회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상품구조의 정확한 이해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숙려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창구에서 투자권유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 2. 투자에 따른 일반적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제도의 차이
 -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

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15조의2(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①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 ①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별지 제3호의1)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2024.01.01 본항 개정>
- ② 위험등급은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2024.01.01 본항 개정>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의2(청약의 철회)

-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서면등"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①-1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금전등"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2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①-3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①-4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②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②-1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②-2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③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④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조의3(위법 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 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

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당한 권유 금지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 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 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 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 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 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

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만한다)
 - 7-1.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2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 "투자자 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3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①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

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권유 특칙)

회사는 임직원 등이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장의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GP가 투자권유 총괄시에는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1년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1년 9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7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준칙 제16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의1)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별지 제3호의1)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제6조에서 정한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아래 별지 제 1 호, 제 5 호, 제 6 호 및 제 9 호 내지 제 11 호의 서식은 표준안에 해당하며, 대면 및 비대면 판매 시 세부 양식은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투자성상품)》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법인 구분

개인 법인

◆ 투자자 구분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함(정보제공 필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
 이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등록 구분

- 등록 및 변경 투자자정보 변동 없이 기존정보와 동일

◆ 투자자정보 기재 사항 (투자성상품 대면용)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개인)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30세 <input type="checkbox"/> 31세~54세 <input type="checkbox"/> 55세~64세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1-1. 고객님의 자본금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법인-총자본기준)	<input type="checkbox"/> 200억 이상 <input type="checkbox"/>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 이상 ~ 1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 ~ 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미만
2.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3. 고객님의 투자 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 일부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 비보장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5.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채무상환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 <input type="checkbox"/> 여유자금 <input type="checkbox"/> 자산증식
6. 고객님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7. 고객님의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느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8. 고객님의 총 자산규모(순자산)는 어느 정도입니까?(개인)	<input type="checkbox"/> 1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 이상 ~ 2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2억 이상 ~ 5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억 이상 ~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
8-1. 고객님의 연매출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법인-손익계산서기준)	<input type="checkbox"/>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 ~ 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 이상 ~ 1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200억 이상
9. 향후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10. 고객님의 기대이익 수준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2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5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0% 범위
11.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2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5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0% 범위

12.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및 투자 기간은?	() 월
---	--------------------------

고객투자성향분석결과	() 형
------------	--------------------------

◆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강화된 설명의무 확인서**

Ⅰ 일반투자자 중 '취약 금융소비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고령자) 미성년자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문맹자 기타()

* 금융소비자 불이익 사항 (원금손실가능성, 손실가능범위,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예금보험관계성립 여부 및 보호한도 등)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 **투자자정보 기재 사항 (투자성상품 비대면용)**

1.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예상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2.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안정형 상품: 초저위험 펀드, CMA, 은행 예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등 <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상품: 원금보장형 ELS, 저위험펀드,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등 <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상품: 원금부분보장형 ELS, 중위험펀드,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등 <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상품: 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비보장형 ELS, 고위험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상품: 주식(신용거래), ELW, 선물옵션, 초고위험펀드 등
3.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이해수준	<input type="checkbox"/>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input type="checkbox"/>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input type="checkbox"/>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4. 재산상황 1)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이 전체 금융자산에 차지하는 비중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10% 초과 ~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초과 ~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초과 ~ 40% 이하 <input type="checkbox"/> 40% 초과
4. 재산상황 2) 여유자금 보유 상황	<input type="checkbox"/> 12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9개월 ~ 12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 ~ 9개월 <input type="checkbox"/> 3개월 ~ 6개월 <input type="checkbox"/> 3개월 미만
4. 재산상황 3) 총 자산규모 (순자산 금액 기준)	<input type="checkbox"/> 5억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4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3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하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또는 투자자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이 귀하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게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 위험 등급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투자 목적	()
	원금보존 추구 여부 ¹⁾	()
	손실감내수준 ²⁾	()
	투자예정기간 ³⁾	()

※ 안내사항

- 1)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경우 투자권유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됩니다
- 2)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손실감내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투자권유가 제한됩니다.
- 3)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투자예정기간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상품구조상 만기까지 환매가 제한되는 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은 투자권유가 제한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대출성상품)》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법인 구분

개인 법인

◆ 투자자 구분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대출성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함(정보제공 필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인 주택담보대출, 증권/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은 체크 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등록 구분

- 등록 및 변경 투자자정보 변동없이 기존정보와 동일

◆ 투자자정보 기재 사항 (대출성상품 대면용)

대출 종류	적합성	<input type="checkbox"/> 지급보증 <input type="checkbox"/> 어음할인/매출채권매입 <input type="checkbox"/> PF대출 <input type="checkbox"/> 브릿지 대출 <input type="checkbox"/> 주택 외 부동산 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채권/동산 담보대출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증권/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거래 목적		<input type="checkbox"/>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매입자금 <input type="checkbox"/> 운영자금 <input type="checkbox"/> 기존대출금 상환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매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리금 변제계획		<input type="checkbox"/> 분양대금 <input type="checkbox"/> 매도상환 <input type="checkbox"/> 리파이낸싱 <input type="checkbox"/> 임대소득 <input type="checkbox"/> 자체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신용	등급(법인)	<input type="checkbox"/> BBB 이상 <input type="checkbox"/> BB 이하 <input type="checkbox"/> 신용등급 없음
	점수(개인)	() 점
	채무불이행 이력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업 력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은 연령 기재)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40세 <input type="checkbox"/> 41~60세 <input type="checkbox"/> 61~70세 <input type="checkbox"/> 71~80세 <input type="checkbox"/> 81세 이상
재산 상황		[법인] 자산총계 _____ 원 부채총계 _____ 원 자본총계 _____ 원 부채비율 _____ % [개인]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약 _____ 원 순소득(연소득-연평균지출) _____ 원

◆ 투자자정보 확인

- 신용공여 약정 이후 설문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카카오페이증권에 통지하여야 투자상품이 본인에게 적정/부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인/서명)
 (대리인 거래시) 인 (인/서명)

(별지 제1-1호)<2026.01.00 개정>

《현재 투자자금성향 확인서》

■ 현재 투자자금성향 파악 기준

구분	질문	활용 및 결과
1. 현재 투자목적	①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② 시장(예: 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익 실현 ③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④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2. 원금 보존 태도	①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중요 ② 원금보존을 고려하나 투자수익이 중요 ③ 손실위험이 있어도 투자수익이 중요	① 선택시 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이 아닌 상품은 투자권유 또는 판매 불가
3. 손실 감내 수준	① 10% 이내 손실 가능 ② 20% 이내 손실 가능 ③ 50% 이내 손실 가능 ④ 70% 이내 손실 가능 ⑤ 전액 손실 가능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적용
4. 투자 예정 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 ⑤ 투자기관과 상관없이 상품 만기일까지 보유	*상품구조상 만기까지 환매가 제한되는 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적용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중단('25.12.31.)으로 1,2 번 문항에 한하여 비대면 적용

(별지 제2호) <2024.01.01 개정>

《고객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1. 투자성상품 Scoring 기준

가. 대면

응답 문항	①	②	③	④	⑤
1번 문항	2(10)점	8(8)점	10(6)점	6(4)점	4(2)점
2번 문항	2점	4점	6점	8점	10점
3번 문항	2점	4점	6점	8점	10점
4번 문항	2점	4점	6점	8점	10점
5번 문항	2점	4점	6점	8점	10점
6번 문항	2점	4점	6점	8점	
7번 문항	2점	4점	6점		
8번 문항	2점	4점	6점	8점	10점
9번 문항	6점	4점	2점		
10번 문항	2점	4점	6점	8점	10점
11번 문항	2점	4점	6점	8점	10점

※ 1번 : 개인(법인) ※ 3번 : 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등급에 의한 투자성향 분류

○ 점수 계산 결과에 따라 1단계 ~ 5단계 등급에 의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류

· 20점이하 :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나. 비대면 <2024.01.01 개정>

응답 문항	①	②	③	④	⑤
1번 문항	1점	2점	3점	4점	5점
2번 문항	1점	2점	3점	4점	5점
3번 문항	1점	2점	3점	4점	
4-1)번 문항	10점	8점	6점	4점	2점
4-2)번 문항	10점	8점	6점	4점	2점
4-3)번 문항	10점	8점	6점	4점	2점
5번 문항	5점	2점	1점		

6-1)번 문항	2점	4점	6점		
6-2)번 문항	2점	4점	6점		
6-3)번 문항	1점	1점	1점	4점	8점
7-1)번 문항	1점	2점	4점	6점	
7-2)번 문항	1점	2점	4점	6점	
연령	1점	10점	6점	2점	1점

※ 연령: ① 만19세 이하 ② 만20세~만40세 ③ 만41세~만50세 ④ 만51세~만64세 ⑤ 만65세 이상

■ 등급에 의한 투자성향 분류

○ 점수 계산 결과에 따라 1단계 ~ 5단계 등급에 의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류

. 30점이하 : 안정형	. 30점초과 ~ 50점이하 : 안정추구형
. 50점초과 ~ 65점이하 : 위험중립형	. 65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2. 대출성상품 판단 기준

가. 대면

■ 적합 판단 기준

거래목적	고객 기재 목적 및 실제 대출 간 부합 시 적합
원리금 변제계획	고객 기재 계획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부합 시 적합
신용등급	법인: [BBB-] 이상시 적합 개인: 50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채무불이행 이력	채무불이행 이력 'N' 적합
업력	법인: 업력: 3년 이상시 적합 개인사업자/개인: 20세 이상부터 적합
재산상황	법인: 3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적합 - 자산 : 20억 원 이상 - 부채 : 10억 원 이하 - 자본 : 10억 원 이상 - 부채비율 : 200% 이하 개인 : 2개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합 - 순자산(총자산-총부채) : 1,000만원 이상 - 순소득(연소득-연평균지출) : 1,000만원 이상

■ 종합결과 판단 기준

- 대출성 상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신용등급, 재산상황 중 어느 하나만으로 적합 또는 부적정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세부 항목에서 부적정 판단이 되었다라도, 아래 사유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적정' 판단 가능함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상세히 기재 필요)
- ① 차주가 사업 경험이 풍부한 경우
- ②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 수익성이 높은 경우
- ③ 당사 내부 판단 사업장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④ 대주주, 계열회사 등의 차주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⑤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비대면

응답 문항	①	②	③	④	⑤
1번 문항	5점	5점	5점	5점	
2번 문항	5점	4점	3점	2점	1점
3번 문항	5점	4점	3점	2점	1점
4번 문항	10점	8점	4점	0점	
5번 문항	5점	5점	5점	4점	
연령	1점	5점	5점	4점	3점

※ 연령: ①만19세 미만 ②만19세~만40세 ③만41세~만50세 ④만51세~만64세 ⑤만65세이상

→ 합산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50점 이상 인 경우 '적정' 표시, 5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 표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1편 목 적

제1조 (목적)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이하 “회사”)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편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제2조(적용대상)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제3조(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① 회사는 제2조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② 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③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제4조(위험등급 체계)

회사는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한다.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5조(위험등급 산정방식)

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제3편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시장위험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3편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계로 산정한다.
2. 신용위험 등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별표 제1호> 신용위험등급 분류(표1)와 같이 산정한다.

나.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제3편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4.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가.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다.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유동성위험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은 설명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나.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다. 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6.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7. 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제3편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험등급 산정시기)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제8조(위험등급의 표시 및 설명)

①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

게 표시한다.

- ② 회사는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③ 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편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제9조(장내파생상품)

- ①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을 부여한다.
- ②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공모 집합투자증권)

- ① 설정 3년 미만 공모 집합투자증권은 <별표 제1호>의 (표2-1)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 ② 설정 3년 경과 공모 집합투자증권은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별표 제1호>의 (표2-2)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③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제2편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사모 집합투자증권)

- ① 사모 집합투자증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 ② 공모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파생결합증권)

- ① 파생결합증권은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별표 제1호>의 (표3)에 따라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② 시장위험등급은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가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상장지수증권은 각 호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 1. 1~2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 기초자산의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 음의 배율로 연동, 해외지수·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한다.
 - 2.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신용위험등급은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별표 제1호> 신용위험등급 분류(표1)를 준용한다.

- ④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제2편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주식워런트증권은 1등급으로 분류한다.

제13조(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1.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
- 2.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 3.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제14조(채무증권)

채무증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1. 회사채는 <별표 제1호> 신용위험등급 분류(표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 2.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제2편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위험등급을 0~2등급 상향)하고,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서에 기재한다.
- 3.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 전환 위험 등 조건을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특정금융신탁)

특정금융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1.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2.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3.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헤지 목적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④ 후단에 따른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투자일임계약)

- ①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6조 특정금융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예외적용)

회사는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2) <2024.01.01. 개정>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2024.01.01. 개정

구 분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매우 높은 위험 (1 등급)	높은 위험 (2 등급)	다소 높은 위험 (3 등급)	보통 위험 (4 등급)	낮은 위험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6 등급)
펀드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주식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신용거래 해외주식	국내주식				
ETF	파생형 ETF 해외 ETF	국내 ETF				
ETN	ETN					
채무증권 ²⁾	장기등급	B+ 이하 또는 무등급	BB+ ~ BB-	BBB+ ~ BBB-	A+ ~ A-	국공채 등 ¹⁾ , AAA ~ AA-
	단기등급	B 이하 또는 무등급	A3	A2	A1	

1)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2)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동 등급체계를 준용

(별지 제4호) <2024.01.01. 개정>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 분류기준》

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실제 문항별(필수 투자자정보 6개 모두 반영) 고객답변결과 기재	
■ 현재 투자자금성향 확인서 결과	
1. 현재 투자목적	2. 원금 보존 태도
※ 실제 문항별 고객답변결과 기재	
3. 손실 감내 수준	4. 투자 예정 기간
※ 실제 문항별 고객답변결과 기재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예)○○○형은 투자성향입니다. ※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
투자권유 상품	(예) ○○증권 제xxx회 파생결합증권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예) 고객이 상품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 ※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
핵심 유의사항	※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하여야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 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적합성 평가는 '혼합방식(Scoring+Factor-out)' 방식으로 수행되며, 위험요소(손실감내수준, 투자예정기간, 목표시장 등)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점수 산출 결과와 관계없이 부적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등 필요사항 기재)	

(별지 제6호)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투자성상품)》

※ 회사별 기존 서류체계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활용 가능

고객명:	고객번호:
------	-------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거래 목적 :	
고객 연령 :	
투자 기간 :	
해당 금투자상품 이해도 :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	
보유자산 등 :	
위험에 대한 태도 :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종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이 유 <small>[부적정인 경우 상세히 서술]</small>	[회사별 기재]

■ 참고 사항

-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 적정/부적정 판단 상세 이유

※(예시) ① () 개 항목 충족/미충족시 또는 ② 총점 () 점 이상/ 총점 () 점 이하 적정/부적정 해당여부는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름(아래 표 참조)

고객 정보	적정/부적정 판단 결과	미충족 사유
거래 목적 :		
고객 연령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투자 기간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해당 금투자상품 이해도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보유자산 등 : (연간 소득 및 부채 포함)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위험에 대한 태도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종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총점()점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이하 회사)이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투자자의 정의)

- ①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서는 고령투자자에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 ③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 고령투자자에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여야 하고,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는 고령투자자에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영업점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 ②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 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하여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전담창구 배치 직원은 근무연한이 3년 이상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영업점의 상황에 따라 배치를 달리 할 수 있다.
- ④ 업무팀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담창구에 배치하는 것을 배제되어야 한다.

제4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회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2.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3.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4.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5.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6.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7.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8.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9.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10.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5조(고령투자자 전담 부서 및 전담 직원)

- ① 회사는 준법감시부서를 고령투자자 전담부서로, 해당 부서의 투자권유절차 담당 직원을 전담직원으로 지정한다.
- ② 회사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전담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
2. 장외파생상품
3. 구조화증권
4. 조건부자본증권
5. 후순위 증권
6. 제1호~제5호의 상품이 주로 편입된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

제7조('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절차)

- ①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지점장 또는 준법관리자(이하 '관리직 직원')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고령투자자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관리직 직원은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 여부
 2. 투자자금의 성격(생계자금 해당 여부 등)
 3.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 변경 여부)
 4.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5.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말투, 기억수준 등의 고려)
- ⑤ 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관리직 직원이 추가로 설명한 후 고령투자자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8조(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회사의 상품기획 및 개발부서는 상품개발 체크리스트 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고령투자자에 대한

위험요인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상품개발 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
2. 고령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제9조(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에 대한 지정인 확인(지정인확인서비스))

회사는 고령투자자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령투자자가 원하는 숙려기간 중에 고령투자자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고객의 계약체결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고령투자자와 함께 숙고하여 줄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 ① 고령투자자 전담부서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본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특히, 고령투자자 전담 창구 직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령투자자 전담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점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판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영업점 영업직원 또는 업무직원은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⑤ 영업점 및 마케팅 관련 부서에서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관련 광고물에 대한 사전 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고령투자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에서 지정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및 초고령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할 수 없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이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초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고, 투자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초고령투자자가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판매를 허용한다.
 1. 상품 가입을 위해 가족 등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조력을 받은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녹취를 하여야 한다.
 2.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조력을 거절하는 경우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관리직 직원은 초고령투

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이나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비대면 방식의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초고령투자자에게 1일 이상의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파생결합증권 등의 청약 마감일에 방문한 초고령투자자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숙려기간 없이 판매하는 것을 예외로 허용하되, 판매 담당 임직원 및 관리직 직원은 관련 상품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하여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 담당 임직원 또는 영업점 준법관리자가 상담내용 등을 기록·유지 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 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청약 철회 대상

-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 (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input type="checkbox"/> 투자성 상품 : <input type="checkbox"/> 대출성 상품 :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년 월 일
2) 계약 체결일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 주의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별지 제11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 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별표 제1호) 위험등급 산정 기준 <2024.01.01. 신설, 2024.03.01 개정>

1. 신용위험등급 분류(표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등급(저위험)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고위험)
장기등급	국공채 등 ^{주1)} , AAA~AA-		A+ ~ A-	BBB+~BBB-	BB+~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 1)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 2)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2. 공모 집합투자증권

(1) 설정 3년 미만(표2-1)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2) 설정 3년 경과(표2-2) (2024.03.01 개정)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비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비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3. 파생결합증권(표3)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 분※	MR1 (고위험)	MR2	MR3	MR4	MR5	MR6 (저위험)
CR1(고위험)	1	1	1	1	1	1
CR2	1	2	2	2	2	2
CR3	1	2	3	3	3	3
CR4	1	2	3	4	4	4
CR5	1	2	3	4	5	5
CR6(저위험)	1	2	3	4	5	6

※ 주: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